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92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김재원 · 황운하 · 김한규
백선희 · 박정현 · 강준현
장종태 · 김교홍 · 박은정
이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체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음. 한편,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지정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보상금수령단체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보상금 수령 체계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8항 신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7항에 따른 단체로 지정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제6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

제50조제6항 중 “제25조제10항”을 “제25조제11항”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

제101조의3제3항 후단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⑦ (생략) <u><신설></u> ⑧ ~ ⑫ (생략)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7항에 따른 단체로 지정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 ⑬ (현행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와 같음)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 ⑤ (생략) 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 ⑧ (생략)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u>제12항까지의</u> -----.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50조(저작권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 ⑤ (생략)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5조제10항 각 호의	제50조(저작권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u>제25조제11항</u>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생 략)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u>제11항까지</u>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 ---- <u>제12항까지</u> 의-----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생 략)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u>제11항까지</u>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 ---- <u>제12항까지</u> 의-----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생 략)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u>제11항까지</u>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② ----- ----- ----- <u>제12항까지</u> ----- -----.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

에 대한 보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u>제11항까지</u> 및 제7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제12항까지</u>----- -----.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u>제11항까지</u>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제12항까지</u>----- -----.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u>제11항까지</u>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제12항까지</u>----- -----.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 ② (생 략)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